

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공고

『고용정책기본법』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, 『사회적기업 육성법』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(19.6.27.)를 거쳐 개정된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상 '취약계층 판단기준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. 7. 5.

고용노동부 장관

1. 취약계층 판단기준 개정 사항

-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
 -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
 - 가. 1년 이상 장기 실직자
 - 나.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(단, 노역유치자는 제외)
 - 다. 「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
 - 라.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(보호관찰기간 중인 자)
 - 마. 노숙인
 - 바. 약물·알코올·도박중독자
 - 사.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(질병관리본부·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)
 - 아.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(여성가장)
 - 자. 난민 (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)
 - 차. 보호종료 아동 (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 이후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중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) <신설>

2. 문의처

-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(☎ 044-202-7427,7422)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(☎ 031-697-7722~7729)
- 기타 세부적인 문의 및 인증 상담 등 지원(무료 컨설팅 등)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9년도 권역별 지원기관(☎ 1800-2012)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 진흥원 홈페이지(www.socialenterprise.or.kr)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참조